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893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893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단52878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김연택, 이용화, 최세학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명

담당변호사 전병주, 채수아, 조대권, 송세훈, 정민수

변론종결 2021. 8. 11.

판결선고 2021. 9.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단52878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21,569,8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69,8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유일한 재산이”를 “유일한 재산인”으로, 같은 쪽 제15행의 “을 제1, 3, 6, 7호증의”를 “을 제1, 3, 6, 7, 15 내지 18호증의”로 각 고치고 제5쪽 제10 내지 11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최규연, 판사 최태영